

국토교통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2021. 2. 18.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11일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4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주요 내용

도심 내 차량 저속통행 유도 및 보행자 편리성 향상

도시지역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형 도로와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그늘막과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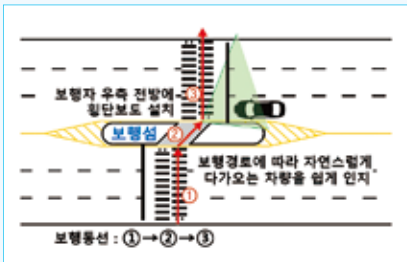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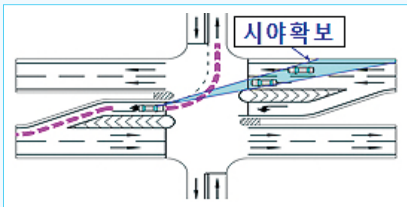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을 차단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도로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제거하고 곡선부의 회전반경을 넓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보행자 안전성을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나 점자블록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고령자의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평면교차로에서 차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분리형 좌회전 차로와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고령자가 느린 걸음으로 인해 횡단보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리형 좌회전 차로*(상), 중앙보행섬(하)

출처: 국토교통부. (2021). 19일부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월 18일 보도자료.

* 좌회전 차로를 별도로 분리하여 고령 운전자가 편하게 좌회전 차로를 찾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 시 건너편에서 우회전하는 대형차량 등을 쉽게 인식하여 불안감 해소 등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기여함